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the Necessary Budget for Operating
Living Wage in Seoul Public Sector**

최 봉

2013-OR-54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the Necessary Budget for Operating
Living Wage in Seoul Public Sector

연구진

연구책임	최 봉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정현철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 생활임금제 확산 추세
- 생활임금제가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음
-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월 16일에 발의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계획
- 서울시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이 필요
-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
- 예산증가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생활임금제 도입 시 소요되는 예산의 파악이 중요
-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
- 생활임금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제도 도입준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1.1.2 연구목적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 검토

- 서울시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제도의 본격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파장을 최소화
- o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검토
- o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확보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

1.2 연구내용 및 방법

- o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실태 조사 및 분석
- o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 파악 및 적용에 따른 서울시 추가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
- o 서울시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 지자체 생활임금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음

2 생활임금제 산정방법의 정교화

2.1 생활임금제 산정방법¹ 리뷰 및 타당성 검증

- o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o 기본가정을 제시함
- 성인 2인(각각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과 영유아자녀 2인(각각 취학아

¹ 서울연구원(2013)의 제Ⅳ장 1절의 내용을 요약

동, 영유아자녀)으로 구성

-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하였으며 2013년 기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3%까지 가산된 금액임
- 생활임금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함

표 1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인 : 근로소득기준	2인 : 가계소득기준	3인 :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인 :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자료 원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기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기타
생활임금액(월급여)	1,249,820원	1,347,632원	1,306,041원	1,278,244원
생활임금액(시간급) ※월 209시간 기준	5,980원	6,448원	6,249원	6,116원
기준	월평균 정액급여	4인가구 전체소득	4인가구 가계지출	최저생계비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빈곤기준 적용	근로소득의 평균 50%	가계소득의 중위수 50%	가계지출의 중위수 50%	-
특징	상용·비상용 근로자소득 고려	가계 전체의 소득 기준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생활임금 추정액(원)	5,980	6,448	6,249	6,116
최저임금 대비 비율 (2013년 기준)	약 1.23배	약 1.33배	약 1.29배	약 1.26배
장점	1인 임금근로 적정선 제시에 효과적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국가의 최저생계기준 충족
적용의 상대적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어려움	비교적 어려움

자료: 서울연구원(2013)

2.2 생활임금제 보완

- 주요 의견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은 가구원 수의 적절성,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단순화 필요성, 빈곤기준선의 일관성 등
- 기존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를 4인으로 가정하였으나 1인가구의 증가 및 4인가구의 대표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됨

- 기존 생활임금 산정방법에서 2안과 3안의 지출항목별 중위수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도 실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공식적으로 정해진 빈곤기준선은 없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생활임금 안마다 빈곤기준의 적용이 다르기(중위수, 평균값 등) 때문에 산정방법의 일관성에 문제 제기가 가능

2.2.1 생활임금 산정방법 보완

- 가구원 수를 기존 4인가구에서 3인가구로 변경한 대안을 추가하여 생활임금을 산정
 - 2010년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4인가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
 - 3인가구의 구성은 맞벌이부부(전일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각각 1인)와 사교육을 받는 자녀 1인으로 가정하며 기존 근로시간인 365시간은 변동이 없음
-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단순화
 - 실행을 염두에 두고 기존 방법보다 단순한 생활임금 산정방법 제시
 - 복잡한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정책실행단계에서 어려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
- 다양한 대안(생활임금 계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행정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및 판단기준을 제공
 - 산정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기 힘든 지자체는 다양한 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춰 생활임금 산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빈곤기준선 적용에 일관성을 부여함
 - 기존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지출항목 중위수의 50%, 평균소득의 50%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음
 - 추가 수정안에서는 빈곤기준선을 평균값의 50%로 통일하여 소득 및 지

출에 적용²

- 주거비는 최소주거기준을 감안한 실거래금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빈곤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기존 대안 중에서 1안과 4안은 보완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1안(근로소득 기준)은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므로 가구원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빈곤기준선은 이미 평균값의 50%를 적용
 - 4안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므로 개정 움직임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음

2.2.2 생활임금 보완 안

- 1) 5안: 3인가구 가계소득 반영
 - 3인가구 소득자료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고려하고 빈곤기준을 적용한 후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계산
- 2) 6안: 3인가구 가계지출에 물가반영 + 실제지출
 - 3인가구의 지출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고려하고 일부 항목은 서울시의 가계현실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계산
- 3) 7안: 서울연구원 3안을 보완한 3인가구 가계지출 + 실제지출
 - 서울시의 물가수준에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가정하여, 지출항목은 전국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활임금을 계산

² 중위값의 50%를 쓰지 않는 이유는 ①국민의 소득은 평균값에 비해 중위값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②3인가구로 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가구당 소득 및 지출은 줄어들었으나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4인가구 기준과 동일하고 ③빈곤기준선을 중위수 50%로 적용한다면 시간급으로 환산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값이 산정되기도 함

- 4) 특징 및 종합
- 서울연구원(2013)의 기존 안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3인가구 기준의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함
 - 이전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도록 계산을 단순화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산정 기준은 유지하려고 노력
 -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에 따라 시급은 최저 5,980원에서 최고 7,218원으로 1,238원의 격차를 보임

표 2 생활임금 보완 요약

구분	5안: 가계소득 반영	6안: 가계지출에 물가반영 + 실제지출	7안: 가계지출 + 실제지출
이전 안	기존 2안 보완	기존 3안 보완(3안)	기존 3안 보완(3-1안)
생활임금(시간)	6,202원	7,218원	6,508원
생활임금(월) ※월 209시간	1,296,218원	1,508,562원	1,360,172원
자료 원천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주택전월세실거래가 자료 국내 사교육비 조사자료	가계동향조사 주택 전월세실거래가 자료 국내 사교육비 조사자료
기준	3인가구 가계소득	3인가구 가계지출	3인가구 가계지출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빈곤기준 적용	가계소득의 평균 50%	지출의 평균 50%	지출의 평균 50%
특징	가계 전체 소득 기준	가계지출에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실제지출이 서울시 물가수준을 이미 반영하였다고 가정
2014 최저임금 대비 비율	약 1.19배	약 1.39배	약 1.25배
장점	가계 전체의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적용의 상대적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비교적 쉬움

3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3.1 임금실태 분석³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임금실태(2013년 10월 기준)를 조사함

3.1.1 기관·대상별 임금구조 분석

-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총 79개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
 - 서울시 본청 22개, 사업소 39개, 투자·출연기관 18개에서 제출한 자료 중 해당사항이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일부제출 포함)은 총 45개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34개를 차지
 - 공공근로사업은 각 실·국 본부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활임금 적용 소요예산 추정 시 별도로 분석

표 3 생활임금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제출	일부제출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본청	22	12	1	9
사업소	39	14	3	22
투자출연기관	18	15	-	3
합계	79	41	4	34

3.1.2 임금실태조사 현황 종합

- 임금실태표를 제출한 45개 기관 4,670명을 대상으로 분석
 -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근로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로자가 3,840명이며 209시간 미만 근로자는 830명으로

3 임금실태 분석은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협조하에 진행되었음

나타남

-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임금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가 898명, 100~150만원이 1,335명, 150만원~200만원이 1,745명, 200만원 초과는 244명
- o 사업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가 2,940명(6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민간위탁 1,076명(23%), 직접고용 654명(14%) 순
- o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3,506명으로 75%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단시간 1,096명(23%), 일용 66명 순임
- o 직종별로는 기타(2,035명)를 제외하면 사무(보조)원이 1,050명으로 22%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시설물관리원(건축·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이 847명(18%), 환경미화원(가로·청소·생활폐기물·수거 등)이 222명 순
- o 재원별로는 시비가 3,962명으로 85%에 달하고 있으며 시비 매칭이 되지 않은 재원(국비, 자체, 기타)은 271명에 불과

3.2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3.2.1 분석 과정

- o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을 시행
- o 산출된 생활임금(7가지 안)을 바탕으로 수당내역 조정, 특성별 구분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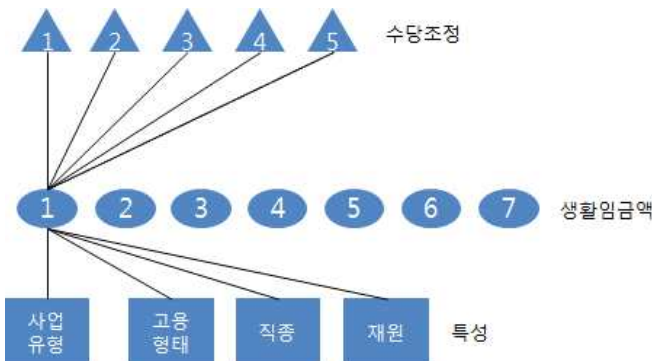


그림 1 생활임금액이 1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분석 내용 예시

- 공공근로사업은 월 임금 지급기준이 최저임금이므로 대상자에게 생활 임금을 보전해 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

3.2.2 생활임금 기준 설정: 수당내역 조정

- 수당조정에 대해 5가지 조정 안을 제시한 후 1인이 받고 있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각 수당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을 추정함

표 4 제외 수당 내역 종합

수당조정 1	수당조정 2	수당조정 3	수당조정 4	수당조정 5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차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	야간수당	야간수당	야간수당	야간수당
-	-	출장비	출장비	출장비
-	-	여비	여비	여비
-	-	-	교통비	교통비
-	-	-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	-	-	간식비/교통비	간식비/교통비
-	-	-	교통수당	교통수당
-	-	-	교통비 등	교통비 등
-	-	-	-	가계보조비
-	-	-	-	가족수당
-	-	-	-	가계안정지원
-	-	-	-	가계지원비
-	-	-	-	가계보조수당
-	-	-	-	주거보조수당

3 2 3 수당조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1) 수당조정 1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45명에서 최대 1,371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2,732만원에서 최고 3억 9,592만원으로 추정

2) 수당조정 2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58명에서 최대 1,384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282만원에서 최고 4억 600만원으로 추정

3) 수당조정 3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58명에서 최대 1,493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288만원에서 최고 4억 1378만원으로 추정

4) 수당조정 4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60명에서 최대 1,639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584만원에서 최고 4억 4,219만원으로 추정

5) 수당조정 5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67명에서 최대 1,732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772만원에서 최고 4억 5,932만원으로 추정

3 2 4 특성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 생활임금액(7가지 안)과 수당내역(5가지 안)을 고려하면 총 35가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이 분석되며 4가지 특성을 고려하면 총 140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

- 여기서는 수당조정 2를 선택하였을 경우의 특성별 사례를 예시함

표 5 특성구분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특성 구분	구분	해당인원 (명)	적용대상(명)		소요예산(만원)	
			최소	최대	최저	최고
사업유형별	직접일자리	2,940	532	793	5,988	21,690
	민간위탁	1,076	228	420	4,776	13,093
	직접고용	654	98	171	2,518	5,816
고용형태별	기간제	3,506	792	1,264	12,543	37,973
	단시간	1,096	56	73	434	1,429
	일용	66	10	47	304	1,168
직종별	사무(보조)원	1,050	423	656	5,685	18,826
	시설물 관리원	882	146	246	361	5,007
	시설물 청소원	119	42	78	714	1,984
	그 외	2,619	247	404	6,522	14,781
재원별	시비	3,962	715	1,171	11,219	34,331
	국비·시비	223	16	28	180	704
	자체	206	112	157	1,666	4,825
	그 외	279	15	28	217	739

3 2 5 공공근로사업

- 2014년 서울시의 목표인원인 600명에게 우선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추가 예산 소요 추정액은 월 기준 최저 약 5,821만원에서 최고 1억 5,180만원임
- 연간 10개월 기준으로 최저 약 6억원에서 최고 15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전체 8,60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 추정액은 월 기준 최저 8억 3,437만원에서 최고 21억 7,587만원
- 연간 10개월 기준으로 최저 약 83억원에서 최고 218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33 종합

- 임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하였음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45명에서 최대 1,732명으로 추정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2,732만원에서 최고 4억 5,932만원으로 예상

표 6 수당조정 내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수당조정 연번	전체인원 (명)	적용대상(명)		소요예산(만원)	
		최소	최대	최저	최고
1	4,670	845	1,371	12,732	39,592
2		858	1,384	13,282	40,600
3		858	1,493	13,288	41,378
4		860	1,639	13,584	44,219
5		867	1,732	13,772	45,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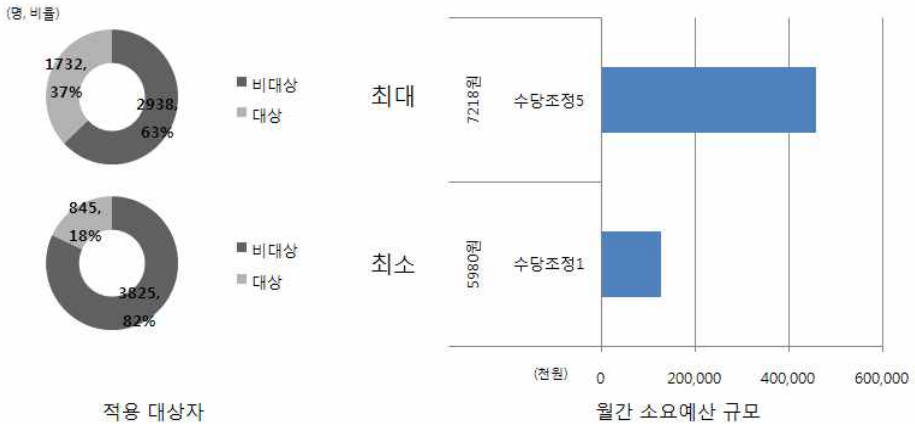


그림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월간 소요예산 규모

- 서울시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대상자 및 소요예산 규모는 서울시 비정규직(직접고용 및 민간위탁)에 비해 공공근로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
- 공공근로사업은 8,600명에 최저 소요예산이 월 8억 3,427만원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비정규직의 월 최대 소요예산 4억 5,931만원에 비해 큰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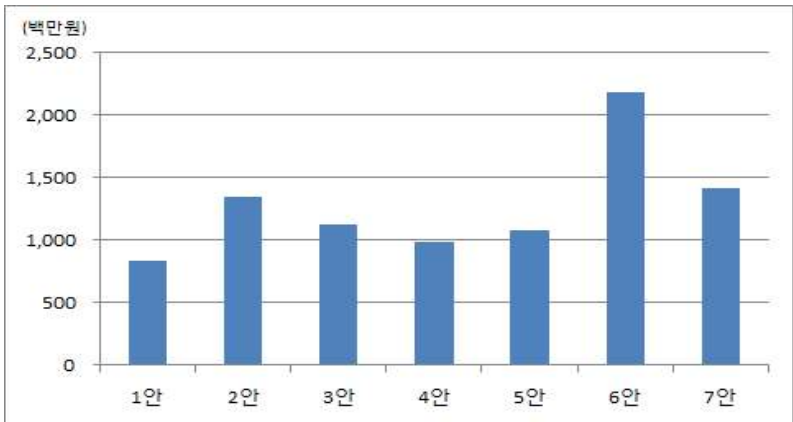


그림 3 생활임금 결정액에 따른 월간 추가예산 소요 추정액(공공근로 8,600명 대상)

4 정책제언

4.1 생활임금 효과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 생활임금 관련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국내 동향을 파악한 후 서울시에 적합한 제도 적용방안을 모색
- 영국(런던),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준비에 활용
-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노원구 및 성북구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 현재 생활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 간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
- 조정구간을 설정하여 생활임금 적용 시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차등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고려⁴
- 현재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 생활임금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민, 이해당사자, 의사결정자와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
- 생활임금 시행 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4.2 정기적인 생활임금 실태조사 시행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임금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을 파악
- 임금실태조사표의 내용과 실제 받고 있는 급여 간 차이가 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 시행
- 생활임금제 적용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 생활임금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임금실태를 파악
- 감시를 위한 기구 및 신고센터 설치

⁴ 예를 들어 생활임금이 7,000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존에 7,100원을 받는 사람도 일부 금액(1% 정도)을 인상해주는 방법

43 생활임금 도입 및 실행 방안

- 생활임금제를 실행하는 방안은 ‘전면 도입’과 ‘우선 적용 후 확대’ 등 도입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전 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형평성의 논란이 없으나 생활임금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 일부 기관에 우선적용 후 확대하는 방안은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우선 적용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기관에 우선적용을 시행하게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적절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본청 소속 부서 중 일부 기관에 우선 적용
- 근로자 임금의 재원이 시비일 경우 우선 적용
- 시의 직접고용 또는 직접일자리에 우선 적용 등

44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441 조례안 가결을 위한 노력

-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예측하기 어려움
- 생활임금 도입 취지가 저소득층의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이란 점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집행부인 서울시 측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여야 함

442 생활임금조례 제정 과정

- 생활임금제 도입은 집행부인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거나 직접 발의하도록 해야 함

45 **민간부문 확대 방안**

-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에 생활임금 적용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안으로 제시되어야 함
- 생활임금은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제도임을 홍보해야 함
-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인증제도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46 **시민 공감대 형성**

- 생활임금제의 실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차례

I	연구개요	24
1	연구배경 및 목적	24
1 1	연구배경	24
1 2	연구목적	26
2	연구내용 및 방법	27
2 1	연구내용	27
2 2	연구방법	27
II	생활임금제 산정방법의 정교화	30
1	생활임금제 산정방법 리뷰 및 타당성 검증	30
1 1	노원구청·성북구청 제시 안	30
1 2	서울연구원 안	34
1 3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안	39
2	생활임금제 보완	40
2 1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논리적 근거 보완	40
2 2	생활임금 산정방법 보완	40
2 3	생활임금액의 비교	44
III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48
1	생활임금제 조례제정 검토	48
1 1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검토	48
1 2	법령위반 검토	52
1 3	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 현황 파악	53

2	임금실태 분석	54
2.1	생활임금 적용대상 사업유형 파악 및 분류	55
2.2	기관·대상별 임금구조 분석	55
3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62
3.1	분석 과정	62
3.2	생활임금 기준 설정: 수당내역 조정	64
3.3	수당조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66
3.4	특성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70
3.5	공공근로사업	75
3.6	종합	77
IV	정책제언	80
1	시사점	80
1.1	생활임금 적용 시 나타나는 현상	80
1.2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	81
2	제도실행을 위한 제언	82
2.1	생활임금 효과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82
2.2	정기적인 생활임금 실태조사 시행	83
2.3	생활임금 도입 및 실행 방안	83
2.4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84
2.5	민간부문 확대 방안	84
2.6	시민 공감대 형성	85
	참고문헌	88
	부록	90

표차례

표 2-1	2014년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 안 비교	33
표 2-2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38
표 2-3	생활임금 보완 요약	44
표 3-1	생활임금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56
표 3-2	서울시 본청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57
표 3-3	사업소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58
표 3-4	투자출연기관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59
표 3-5	임금실태조사표에서 나타난 수당 내역	65
표 3-6	제외 수당 내역 종합	66
표 3-7	수당조정 1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67
표 3-8	수당조정 2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67
표 3-9	수당조정 3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68
표 3-10	수당조정 4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69
표 3-11	수당조정 5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69
표 3-12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71
표 3-13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71
표 3-14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72
표 3-15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72
표 3-16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73
표 3-17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73
표 3-18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74
표 3-19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75
표 3-20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6
표 3-2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연간 추가 소요 예산액 추정	77

그림차례

그림 1-1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단계별·활동주체별 과업	28
그림 2-1	생활임금 안 비교	45
그림 3-1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근로시간 기준	59
그림 3-2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임금계 기준	60
그림 3-3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사업유형 기준	60
그림 3-4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고용형태 기준	61
그림 3-5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직종 기준	61
그림 3-6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채용 기준	62
그림 3-7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	62
그림 3-8	생활임금액이 1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분석 내용 예시	63
그림 3-9	수당조정내역이 1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분석 내용 예시	64
그림 3-10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월간 소요예산 규모	77
그림 3-11	생활임금 결정액에 따른 월간 추가예산 소요 추정액	78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1.1.1 생활임금제 확산 추세

- 생활임금제가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 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음
- 서울시 노원구 및 성북구는 2013년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조례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2013.12.6.) 하여 의회를 통과
- 서울시 강남구 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
-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이 2013년 12월 20일에 도의회에서 의결
- 충청남도는 생활임금조례제정을 준비 중임
- 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월 16일에 김경협 의원 대표로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가 목적

1.1.2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계획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와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사례 분석에 따르면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자체예산의 0.1%에 불과(서울연구원, 2013)
- 서울시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이 필요
-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
- 조례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사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수정되어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음
- 예산증가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생활임금제 도입 시 소요되는 예산의 파악이 중요함

113 생활임금제 도입검토 관련 연구

- 노원구청·성북구청(2013)은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임금 결정방식과 적정수준
- 생활임금 적용범위와 추가 소요예산 수준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 서울연구원(2013)은 본격적인 생활임금제 실행에 앞서 도입검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생활임금제 관련 국내외 사례
- 서울의 생활임금 산정 기준 및 방법론 제시
- 생활임금제 적용 시 우선적용대상 검토
-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에 대한 개념 설명 및 설계안 제시
-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의 소요예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 필요

- 생활임금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부천시는 생활임금조례 제정과정에서 난항을 겪음
- 생활임금조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나 조례제정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함
- 조례제정 단계에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받음
-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조례안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반발이 있었으며 2014년 2월13일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됨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제도 도입준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조례제정 준비를 위해서는 부천시 및 경기도의 사례를 참조해야 함

연구목적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 검토
- 서울시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제도의 본격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파장을 최소화
-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검토
-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확보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생활임금제 산정방법의 정교화
- 생활임금 산정방법 리뷰
- 타당성 검증을 통한 기존 산정방법의 보완
-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 생활임금제 조례제정 검토
- 임금실태 분석
-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2.2 연구방법

2.2.1 실태조사 및 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실태 조사 및 분석

2.2.2 데이터 분석

-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 파악 및 적용에 따른 서울시 추가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

2.2.3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 지자체 생활임금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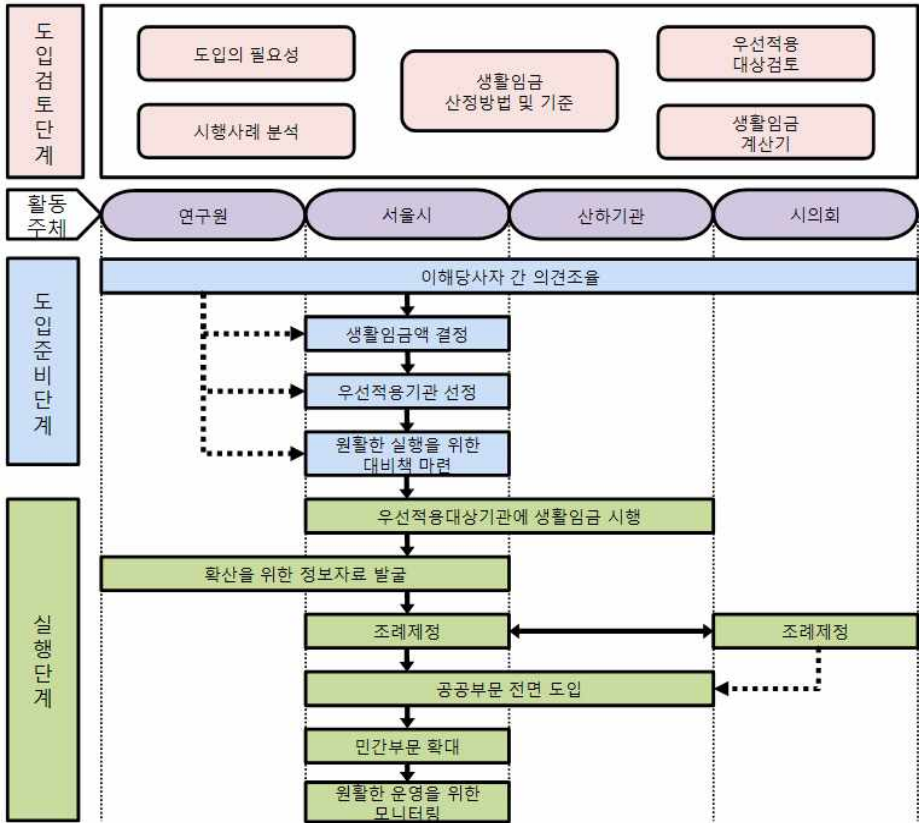


그림 1-1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단계별·활동주체별 과업

II 생활임금제 산정방법의 정교화

- 1 생활임금제 산정방법 리뷰 및 타당성 검증
- 2 생활임금제 보완

II 생활임금제 산정방법의 정교화

1 생활임금제 산정방법 리뷰 및 타당성 검증

- 국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법이 있음을 확인
- 국내에서는 노원구청·성북구청, 서울연구원, 경기도, 부천시 등이 생활임금을 제시하였음
- 노원구청·성북구청(2013)과 서울연구원(2013)이 체계적인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제시
- 경기도, 부천시는 현행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제시하였으나 산정 근거 제시는 다소 미흡
- 해외 사례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질랜드 등의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았음
- 국내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해외 생활임금 산정은 서울연구원(2013)을 참고

1.1 노원구청·성북구청 제시 안⁵

1.1.1 최저생계비 방식(이하 노원성북 1안)

- 서울시 평균가구원 수를 고려한 2014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한 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산정
- 통계청(2010)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
- 서울시·서울복지재단(2012)⁶에 따르면 서울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으로 인해 전국보다 16%(모형1)에서 32%(모형2)의 생계비가 더 필요

5 노원구청·성북구청(2013) 제1장 제4절을 요약하였음

6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제시된 생활물가 반영분을 인용하여 전국 대비 서울의 물가수준을 추정하였으며 이 방식은 노원구청·성북구청(2013)뿐만 아니라 서울연구원(2013)에서도 이용하였음

- 이를 근거로 하여 전국 대비 서울의 물가수준을 추정
- 2.7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한 후 서울시 물가수준(하한선인 16%를 적용)을 반영
- 2014년 2.7인가구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238,608원
- 물가수준 16%를 적용한 서울시 2.7인가구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436,785원

① 2014년 2.7인가구 최저생계비
 $= 2\text{인가구 생계비} + [(3\text{인가구 생계비} - 2\text{인가구 생계비}) \times 70\%]$
 $= 1,027,417\text{원} + [(1,329,118 - 1,027,417) \times 70\%]$
 $= 1,238,608\text{원}$

② 2.7인가구 최저생계비에서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 16% 적용
 $= 1,238,608 + (1,238,608 \times 16\%) = 1,436,785\text{원}$

- 이 방식은 가족임금으로서의 생활임금에 부합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저생계비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

1 1 2 실태생계비 방식(이하 노원성북 2안)

- 저소득층의 실태를 반영하여 생계비를 추정
- 통계청 조사에서 가장 저소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분위 소득계층의 가계지출을 파악한 후 서울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전국 대비 16~32% 높음)을 반영
- 1분위 소득계층의 가계지출에 서울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의 하한선인 16%를 적용
- 1분위의 가계지출 금액은 1,534,000원이고 2013년 1/4분기 서울의 물가상승률(1.2%, 18,408원)만큼 더한 금액은 1,552,408원
-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의 하한선 16%를 적용한 금액은 1,800,793원

① 2014년 1/4분기 1분위 소득계층 실태 생계비
 = (2013년 1/4분기 1분위 소득계층 실태 생계비 + 2013년 1/4분기 서울의
 생활물가 인상률 1.2%) = 1,534,000 + 18,408 = 1,552,408원

②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 16% 적용
 = 1,552,408 + (1,552,408 × 16%) = 1,800,793원

- 분위별 가계지출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실태생계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생활임금보다 과도하게 높게 인상되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

113 근로자 임금 방식(이하 노원성북 3안)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른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에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16~32%)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
- 2013년 노원구 및 성북구에서 적용한 방식으로 서울시 물가수준의 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
- 노원구와 성북구는 전국 대비 서울 생활물가 수준의 하한선인 16%의 절반인 8%를 반영한 3안으로 2014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①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 1,234,907원

②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 반영 비율: 8% = 197,585원, 10% = 246,981원

③ 2014년 생활임금 = 8% 적용 시 - 1,432,492원, 10% 적용 시 - 1,481,888원

- 2013년에 이어 같은 방안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생활임금 적용방법의 연속성을 지녀 산정방법의 일관성을 나타낸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표가 구별 최저생계비나 저소득층 대표가구별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특징 및 종합

- 노원구·성북구는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
- 각 안의 장단점을 언급하여 생활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 2014년에는 3안을 생활임금으로 결정
- 정책적 연속성 확보와 시행의 수월함을 고려하였음
- 생활임금은 월 급여 기준으로 제시
- 월 급여는 최저 1,436,785원에서 최대 1,800,79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시간급은 따로 제시하지 않음
- 생활임금액을 시간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저 6,874원에서 최대 8,616원으로 환산됨
- 2014년 최저임금 대비 적게는 32%에서 최대 65%까지 가산된 금액
- 3안의 경우 연구보고서에서는 생활물가 반영을 10%로 적용하였으나 시행은 8%로 결정하였음
- 서울시 물가인상분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

표 2-1 2014년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 안 비교

구분	노원성북 1안 최저생계비 방식	노원성북 2안 실태생계비 방식	노원성북 3안 근로자 임금 방식
생활임금액(월급여)	1,436,785원	1,800,793원	1,481,888원
생활임금액(시간급) ※월 209시간 기준	6,874원	8,616원	7,090원
최저임금 대비 비율	1.32배	1.65배	1.36배
결정방식	절대적 방식	절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결정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서울의 생활물가 16%	2013년 실태생계비 서울의 생활물가 16%	2012년 평균임금 50% 서울의 생활물가 10%
2013년 생활임금 대비 인상액	78,990원	442,998원	124,093원

표 계속 2014년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 안 비교

구분	노원성북 1안 최저생계비 방식	노원성북 2안 실태생계비 방식	노원성북 3안 근로자 임금 방식
2013년 생활임금 대비 인상률	5.8%	32.6%	9.1%
2014년 최저임금 (1,088,890원) 대비 인상액	347,895원	711,903원	392,998원
2012년 정액급여 (2,469,814원) 대비 비중	58.2%	72.9%	60.0%
정책 목표	최저생계비 보장	실태생계비 보장	임금격차 해소 법정 최저임금 견인

자료: 노원구청·성북구청(2013)

주: 3안에서 제시된 생활임금액 1,481,888원은 노원구·성북구 모형에서 생활물가 10% 적용을 기준으로 노원구청·성북구청(2013)의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임

1.2 서울연구원 안⁷

- 생활임금 산정의 기본방향과 가정을 설정한 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
-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춰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국내 및 해외의 생활임금 산정 사례를 참고
- 서울의 통계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
-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이라는 취지에 맞춰 가계 소득 및 지출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산정
- 생활임금 산정의 척도로 상대빈곤기준선을 활용
- 빈곤기준선에 대한 표준화된 수치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균값의 50% 또는 중위수의 5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기본가정을 설정한 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음

7 서울연구원(2013)의 제Ⅳ장 1절의 내용을 요약

- 4인가구 중 부부, 진학자녀(취학아동), 영유아자녀(미취학아동)로 구성된 가구를 기본가계로 설정
- 성인 2인의 근로시간은 월 365시간이며 각각 전일제, 시간제 노동으로 구성
- 근로시간은 전일제 노동자 월 209시간, 시간제 노동자 월 156시간으로 가정
- 이는 주휴수당이 반영된 근로시간
- 자녀는 초중고생 1인, 미취학아동 1인으로 구성

1 2 1 **1안: 근로소득기준**

-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을 추정하여 1인에게 지급해야 할 생활임금을 계산
- 2012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서울 근로자의 시급은 상용 14,060원, 비상용 9,860원으로 추정
- 상대빈곤기준을 근로소득 평균의 50%로 적용하면 상용이 7,030원, 비상용이 4,930원이며 이를 산술평균하면 5,980원

① 2012년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전국 2,469,814원(a), 서울 2,938,614원(b)

② 2012년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전국 1,292,739원(c), 서울 추정치 1,538,116원(d)

※ {(b)의 시급 추정치 1/2 + (d)의 시급 추정치 1/2} ÷ 2 = 5,980원

- 1안은 근로자 1명의 임금근로 적정선 제시에 효과적이며 산정방법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족임금으로서의 생활임금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괴리가 있음

2안: 가계소득기준

- 4인가구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구하는 방식
- 4인가구 소득자료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빈곤기준을 적용한 후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계산
-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전국 4인가구 가계소득의 중위값은 405만 8천원이며 서울 값을 추정하기 위해 서울시·서울복지재단(2012)에서 나온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16~32% 높음)의 16% 적용
- 빈곤기준인 중위값의 50%를 적용한 후 총 근로시간(365시간)으로 나누면 생활임금은 시급 6,448원

① 2012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4인가구 소득 중위수는 405만 8천원

②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 16% 반영 후 빈곤기준 적용(중위수의 50%)

※4,058,000원 × 116% × 1/2 ÷ 365 = 6,448원

- 2안은 가계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하나 생활에 필요한 지출수준 및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음

3안: 가계지출 + 실제지출

- 4인가구의 지출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구하는 방식
- 4인가구의 지출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일부 항목은 서울시 및 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계산
-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항목별 중위수를 구한 다음 빈곤기준인 중위수 50%를 적용한 후 서울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지출수준을 파악
- 서울의 실제 지출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현실화
- 주거임대료는 서울시 주택실거래가 자료의 월세평가액을 반영하고 사교육비는 서울시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적용

-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6,249원

- ① 2012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중위수를 구하고 서울시 물가수준 116%를 반영 후
빈곤기준선(중위수 50%) 적용
 - ② 주거임대료 및 사교육비는 서울시 현실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
- ※ {(주거, 사교육 제외 지출 2,852,617원 × 1/2) + 주거비 600,000원 + 사교육비 254,400원} ÷ 365시간 = 6,249원

- 3안은 가계의 실제지출을 반영하여 생활임금도입취지를 잘 살렸지만 계산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1 2 4 **4안: 최저생계비 + 실제지출**

-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구하는 방식
-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일부 항목은 서울시 및 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계산
-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서울 물가수준을 반영한 후 주거비와 교육비 항목을 현실화
- 서울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대체
- 최저생계비와 실제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6,116원

- ① 2013년 최저생계비에 서울시 물가수준 116% 반영 후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서울시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
- ※ 2,232,580원 ÷ 365시간 = 6,116원

- 4안은 국가의 최저생계 기준을 충족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저생계비에 대한 적정수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1 2 5 **특징 및 종합**

-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하였음
- 2013년 기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3%까지 가산된 금액임
- 사용자측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면 시간급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임금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함
- 생활임금 계산방법이 복잡할수록 현실반영의 폭은 커지나 시행에서는 어려움이 따름
- 4가지 안을 제시한 후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표 2-2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안 : 근로소득기준	2안 : 가계소득기준	3안 :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안 :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자료 원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기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기타
생활임금액(월급여)	1,249,820원	1,347,632원	1,306,041원	1,278,244원
생활임금액(시간급) <small>※월 209시간 기준</small>	5,980원	6,448원	6,249원	6,116원
기준	월평균 정액급여	4인가구 전체소득	4인가구 가계지출	최저생계비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빈곤기준 적용	근로소득의 평균 50%	가계소득의 중위수 50%	가계지출의 중위수 50%	-
특징	상용·비상용 근로자소득 고려	가계 전체의 소득 기준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생활임금 추정액(원)	5,980	6,448	6,249	6,116
최저임금 대비 비율 (2013년 기준)	약 1.23배	약 1.33배	약 1.29배	약 1.26배
장점	1인 임금근로 적정선 제시에 효과적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국가의 최저생계기준 충족
적용의 상대적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어려움	비교적 어려움

자료: 서울연구원(2013)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안

- 서울시와 노원구청·성북구청을 제외한 타 지자체가 생활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지만 생활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부천시에서는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었으며, 경기도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131

부천시

- 2014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2013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결정함
- 2013년 생활임금은 5,180원으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으나 지자체의 재정수준을 고려하여 낮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7% 높지만 노원구청·성북구청 및 서울연구원의 안보다 낮은 수준
- 시급 역전방지와 근속연수 차이 등을 고려해서 최대 인상구간은 5,860원까지 설계함
- 현재 5,860원 이상을 받고 있는 생활임금 미적용대상자는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구간을 설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함

132

경기도

- 경기도는 최저임금의 150%를 생활임금으로 적용할 예정
-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드러나지 않음

생활임금제 보완

2.1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논리적 근거 보완

- 서울연구원(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주요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생활임금 산정식을 추가
- 현 실태와 관련한 주요 의견사항을 반영하고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여 기존 안에 새로운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추가 제시
- 주요 의견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은 가구원 수의 적절성,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단순화 필요성, 빈곤기준선의 일관성 등
- 기존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를 4인으로 가정하였으나 1인가구의 증가 및 4인가구의 대표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됨
- 기존 생활임금 산정방법에서 2안과 3안의 지출항목별 중위수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도 실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공식적으로 정해진 빈곤기준선은 없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생활임금 안마다 빈곤기준의 적용이 다르기(중위수, 평균값 등) 때문에 산정방법의 일관성에 문제 제기가 가능

2.2 생활임금 산정방법 보완

2.2.1 보완방향

- 가구원 수를 기존 4인가구에서 3인가구로 변경한 대안을 추가하여 생활 임금을 산정
- 2010년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4인가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
- 3인가구의 구성은 맞벌이부부(전일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각각 1인)와 사교육을 받는 자녀 1인으로 가정하며 기존 근로시간인 365시간은

변동이 없음

- 생활임금 산정방법을 단순화
- 실행을 염두에 두고 기존 방법보다 단순한 생활임금 산정방법 제시
- 복잡한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정책실행단계에서 어려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
- 다양한 대안(생활임금 계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행정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및 판단기준을 제공
- 산정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기 힘든 지자체는 다양한 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춰 생활임금 산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빈곤기준선 적용에 일관성을 부여함
- 기존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지출항목 중위수의 50%, 평균소득의 50%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음
- 추가 수정안에서는 빈곤기준선을 평균값의 50%로 통일하여 소득 및 지출에 적용⁸
- 주거비는 최소주거기준을 감안한 실거래금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빈곤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기존 대안 중에서 1안과 4안은 보완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1안(근로소득 기준)은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므로 가구원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빈곤기준선은 이미 평균값의 50%를 적용
- 4안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므로 개정 움직임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음

8 중위값의 50%를 쓰지 않는 이유는 ① 국민의 소득은 평균값에 비해 중위값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② 3인가구로 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가구당 소득 및 지출은 줄어들었으나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4인가구 기준과 동일하고 ③ 빈곤기준선을 중위수 50%로 적용한다면 시간급으로 환산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값이 산정되기도 함

생활임금 보완 안

1) 5안: 3인가구 가계소득 반영

- 서울연구원(2013년) 2안을 보완한 방안
- 3인가구 소득자료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고려하고 빈곤기준을 적용한 후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계산
-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전국 3인가구 평균소득은 3,903,083원이며 서울의 가계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16~32% 높음)을 반영
- 빈곤기준은 평균값의 50%를 적용하였으며 총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기존과 동일함
- 생활임금액은 시급 6,202원으로 산정됨

① 2012년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평균소득 3,903,083원(a)에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 16%를 가산 후 빈곤기준선 적용

※(a) × 116% × 1/2 ÷ 365시간 = 6,202원

2) 6안: 3인가구 가계지출에 물가반영 + 실제지출

- 서울연구원(2013년) 3안을 보완한 방안
- 3인가구의 지출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고려하고 일부 항목은 서울시의 가계현실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계산
-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전국 3인가구 평균지출은 3,238,893원이며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16~32% 높음)을 적용하여 물가를 반영한 후 빈곤기준선인 평균값의 50%를 적용
- 주거비는 국토교통부 최소주거기준인 36㎡의 주택 월세 추정치 600,000원을 반영
- 사교육비는 서울 평균 사교육비 312,000원에 빈곤기준선인 평균값의 50%를 적용하여 가산
- 생활임금액은 시급 7,218원으로 산정됨

① 2012년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는 3,238,893원(a)

② (a)에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수준 16%를 가산 후 빈곤기준선 적용

③ 주거비는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000원(b), 사교육비는 서울평균의 50%인 156,000원(c)

※ $[(a) \times 116\% \times 1/2] + (b) + (c) \div 365\text{시간} = 7,218\text{원}$

3) 7안: 서울연구원 3안을 보완한 3인가구 가계지출 + 실제지출

- 서울연구원(2013년) 수정 3안을 보완한 방안
- 서울시의 물가수준에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가정하여, 지출항목은 전국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활임금을 계산
-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전국 3인가구 평균지출은 3,238,893원이며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16~32% 높음)을 반영하지 않고 빈곤 기준선인 평균 50%를 적용
- 주거비와 사교육비는 수정 3안과 동일하게 적용
- 생활임금은 시급 6,508원으로 산정됨

① 2012년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는 3,238,893원(a)

② 주거비는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000원(b), 사교육비는 서울평균의 50%인 156,000원(c)

※ $[(a) \times 1/2] + (b) + (c) \div 365\text{시간} = 6,508\text{원}$

4) 특징 및 종합

- 서울연구원(2013)의 기존 안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3인가구 기준의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함
- 2014년 기준 생활임금은 최저 6,202원에서 최고 7,218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9%~39% 정도 높은 수준
- 이전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도록 계산을 단순화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산정 기준은 유지하려고 노력

- 빈곤기준선을 평균값의 50%로 일괄 적용하여 계산 과정이 이전 방식에 비해 수월하므로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표 2-3 생활임금 보완 요약

구분	5안: 가계소득 반영	6안: 가계지출에 물가반영+ 실제지출	7안: 가계지출 + 실제지출
이전 안	기존 2안 보완	기존 3안 보완(3안)	기존 3안 보완(3-1안)
생활임금(시간)	6,202원	7,218원	6,508원
생활임금(월) ※월 209시간	1,296,218원	1,508,562원	1,360,172원
자료 원천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주택전월세실거래가 자료 국내 사교육비 조사자료	가계동향조사 주택 전월세실거래가 자료 국내 사교육비 조사자료
기준	3인가구 가계소득	3인가구 가계지출	3인가구 가계지출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빈곤기준 적용	가계소득의 평균 50%	지출의 평균 50%	지출의 평균 50%
특징	가계 전체 소득 기준	가계지출에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실제지출이 서울시 물가수준을 이미 반영하였다고 가정
2014 최저임금 대비 비율	약 1.19배	약 1.39배	약 1.25배
장점	가계 전체의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적용의 상대적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비교적 쉬움

2.3 생활임금액의 비교

-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에 따라 시급은 최저 5,980원에서 최고 7,218원으로 1,238원의 격차를 보임
- 최저 금액은 1안의 5,980원이며 2014년 최저임금 대비 1.15배 수준
- 최고 금액은 6안의 7,218원이며 2014년 최저임금의 1.39배
- 생활임금의 결정금액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예산 규모는 달라짐

- 서울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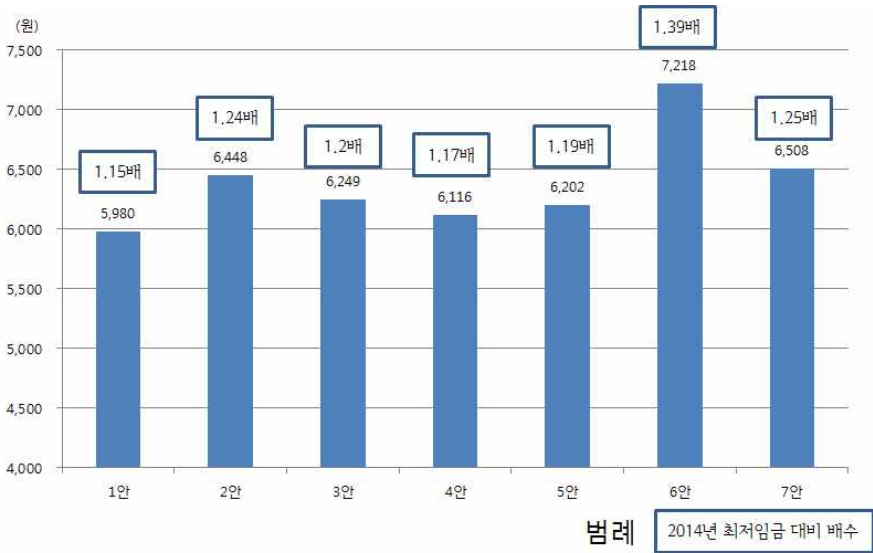


그림 2-1 생활임금 안 비교

III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 1 생활임금제 조례제정 검토
- 2 임금실태 분석
- 3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III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1 생활임금제 조례제정 검토

1.1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검토⁹⁾

- 생활임금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생활임금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 의사결정자가 바뀌더라도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수월
- 임금수준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강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생활임금조례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으로 부천시는 이로 인해 조례제정에 어려움을 겪었음
- 최근 생활임금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음
-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1 임금수준에 관한 법제

1) 헌법

-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근로조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음
-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⁹⁾ 노원구·성북구(2013) ‘제3장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

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헌법은 적정임금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음
-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를 지정
-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음

2)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헌법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금액 등 실질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음
- 근로기준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제3장(43조~49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금지급 방법, 임금채권의 보호, 산정 방법에 관한 기초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장에서 금액결정방법이나 수준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음

3)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음
-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 이의절차 방법, 결정된 최저임금의 효력과 적용방법은 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거나 평균임금, 생계비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 및 준수해야 한다는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임

- 최저임금의 기준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보장과 거리가 있음

1 1 2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제

1)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은 공공조달계약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다소 반영한 것이 지방계약법임
-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계약)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 방위사업법 등이 있음
- 국방조달에 특화된 방위사업법은 논의에서 제외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계약원칙과 관련해서 일부 문언(文言)에 차이가 있음
- 지방계약법 등 조달계약 관련 법령 자체에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낙찰 받은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지방계약법 양자 모두 재정지출이 부담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단, 심사기준에 관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제한이 있음)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에 관해서는 조항이 없음
- 원칙적으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원칙에 따라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고 자격심사를 하여야 함
-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113 지방자치 관련 법령

1) 조례 제정권 관련 법령

- 대법원은 생활보호법과 생계비 지원조례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때

2) 지방재정법

-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조례에 의하는 경우라도 법률 규정이 있거나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부 및 보조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

1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법률적 근거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음
-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임
- 생활임금 도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당 법률이 제정된다면 생활임금조례 제정 시 상위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통과된다면 조례제정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생활임금과 관련된 상위법이 없는 상태로 생활임금조례 도입을 추진하였던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1.2 법령위반 검토¹⁰

1.2.1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원래 의회에 속하여 예산재정과 관련된 의회의 권한은 본래 지방자치법이 예정하고 있는 견제권의 범위 내에 있음
- 지방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음이 전제
- 생활임금 심의기구를 만들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게 됨

1.2.2 지방재정법상 기부·보조 금지 규정 위반인지

-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음
-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기준에 더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최저임금을 전국적 최저 규제기준으로 보고 추가조례가 허용된다고 봄

1.2.3 지방계약법과 안전행정부 기준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계약조건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금지하

¹⁰ 노원구·성북구(2013) '제3장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

는 ‘강요 또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상대방 결정 방법에 관하여 조례로 새로 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13 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 현황 파악

131 부천시

- 2011년 12월20일 부천시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과 관련한 최초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2년 5월부터 사업추진을 의결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였음
- 2012년 공공부문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공공부문에 근무 중인 시급 6,000원 이하(월급 125만원 이하) 1,267명 중 시급 5,800원 미만 680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로 의결
 - 추진위원회는 노(1명), 사(1명), 공익(2명), 정(1명), 공공부문(1명), 자문위원(3명), 협의회(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 부천시는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의결과정은 순탄치 않았음
 - 2013년 10월 8일 여야의원 공동으로 생활임금조례를 발의
 - 10월 25일 전국 최초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 11월 8일 경기도는 부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 11월 13일 부천시는 조례를 재심의함
 - 12월 6일 부천시의회 재상정 및 재의결
 - 2014년 2월 18일 부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생활임금을 5,580원으로 확정

132

경기도

- 2013년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의결하였음
- 조례가 의결된 후 경기도에서 재의를 요구함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
- 2014년 2월 13일 생활임금조례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어 무산됨
- 최저임금법과 상충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
-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는 상황임

133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생활임금조례제정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이 없으나 추진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성북구는 2014년 상반기 안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 노원구는 2014년 7월 새로운 구의회가 구성되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2

임금실태 분석¹¹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금실태(2013년 10월 기준)를 조사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일자리 사업

11

임금실태 분석은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협조하에 진행되었음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 o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임
-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시설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간접 고용근로자
- 공무원, 준공무원, 공무원 예정자 등

2.1 생활임금 적용대상 사업유형 파악 및 분류

- o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으나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어서 서울시의 지난 1차(12년 5월) 및 2차(13년 1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등
- o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우리동네 보육반장, 학교농장지도사, 금연구역지킴이, 시민일자리설계사 등 뉴딜일자리 사업 종사자
- 아이돌보미, 환자권리옴부즈만, 여성장애인 홈헬퍼, 교통서포터즈 사업 등 서울시 각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 종사자
- o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함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청소년상담센터 등 344개 시(市)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2 기관·대상별 임금구조 분석

- o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총 79개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
- 서울시 본청 22개, 사업소 39개, 투자·출연기관 18개에서 제출한 자료

중 해당사항이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일부제출 포함)은 총 45개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34개를 차지

- 공공근로사업은 각 실·국 본부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활임금 적용 소요예산 추정 시 별도로 분석

표 3-1 생활임금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제출	일부제출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본청	22	12	1	9
사업소	39	14	3	22
투자출연기관	18	15	-	3
합계	79	41	4	34

2.2.1 임금실태조사표 기관별 제출 현황

- o 서울시 본청에 소속된 총 22개 조직의 임금구조를 분석
-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정보화기획단, 경제진흥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정국, 교육협력국, 재무국,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등 총 12개 기관이 제출
- 복지건강실 1개 기관은 일부 제출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감사관, 비상기획관, 마곡사업추진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등 총 9개는 해당사항이 없음

표 3-2 서울시 본청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구분	기관	제출여부	구분	기관	제출여부
1	대변인	해당없음	12	도시교통본부	○
2	서울혁신기획관	○	13	기후환경본부	○
3	시민소통기획관	해당없음	1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4	기획조정실	해당없음	15	행정국	○
5	여성가족정책실	○	16	교육협력국	○
6	감사관	해당없음	17	재무국	○
7	비상기획관	해당없음	18	기술심사담당관	해당없음
8	정보화기획단	○	19	도시안전실	○
9	마곡사업추진단	해당없음	20	주택정책실	○
10	경제진흥실	○	21	도시계획국	해당없음
11	복지건강실	△	22	푸른도시국	해당없음

- 총 39개 사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함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 병원, 서북병원, 농업기술센터,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대공원, 품질시험소,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상수도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이 제출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등 3개 기관은 일부 제출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공무원수련원, 데이터 센터, 은평병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미술관, 차량정비센터, 교통방송본부,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청와대소방대, 여성보호센터 등 총 22개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음

표 3-3 사업소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구분	기관	제출여부	구분	기관	제출여부
1	소방재난본부	○	2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2	도시기반시설본부	해당없음	22	서울대공원	○
3	상수도사업본부	○	23	차량정비센터	해당없음
4	한강사업본부	○	24	교통방송본부	해당없음
5	서울시립대학교	해당없음	25	품질시험소	○
6	인재개발원	해당없음	26	종량물재생센터	○
7	공무원수련원	해당없음	27	난지물재생센터	○
8	데이터센터	해당없음	28	동부도로사업소	해당없음
9	보건환경연구원	○	29	서부도로사업소	해당없음
10	어린이병원	○	30	남부도로사업소	해당없음
11	은평병원	해당없음	31	북부도로사업소	해당없음
12	서북병원	○	32	성동도로사업소	해당없음
13	아동복지센터	해당없음	33	강서도로사업소	해당없음
14	농업기술센터	○	34	상수도연구원	○
15	서울역사박물관	○	35	서울종합방재센터	해당없음
16	한성백제박물관	○	36	소방학교	해당없음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해당없음	37	소방항공대	해당없음
18	시립미술관	해당없음	38	청와대소방대	해당없음
1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39	여성보호센터	해당없음
2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 총 18개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함
-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자원봉사센터, 서울관광마케팅 등 14개 기관이 제출
- 서울메트로,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장학재단은 해당사항이 없음

표 3-4 투자출연기관 임금실태조사표 제출 현황

구분	기관	제출여부	구분	기관	제출여부
1	서울메트로	해당없음	10	세종문화회관	해당없음
2	도시철도공사	○	11	서울여성가족재단	○
3	시설관리공단	○	12	서울시복지재단	○
4	농수산식품공사	○	13	서울문화재단	○
5	SH공사	○	14	서울시립교향악단	○
6	서울의료원	해당없음	15	디자인재단	○
7	서울연구원	○	16	자원봉사센터	○
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7	장학재단	해당없음
9	서울신용보증재단	○	18	서울관광마케팅	○

2.2.2 임금실태조사 현황 종합

- 임금실태표를 제출한 45개 기관 4,670명을 대상으로 분석
-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근로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로자가 3,840명이며 209시간 미만 근로자는 830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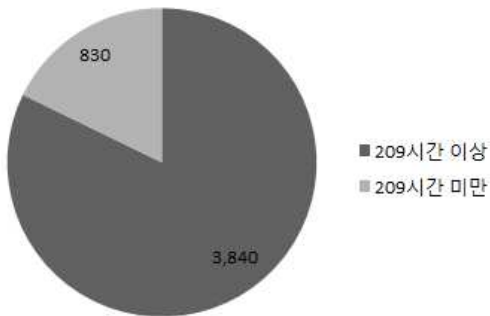


그림 3-1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근로시간 기준

-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임금계를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898명, 100~150만원 1,335명, 150만원 ~ 200만원 1,745명, 200만원 초과는 244명

- 전체 대상자 중 200만원 이하가 3,978명으로 85%를 차지(18명은 월기준 임금계 추정이 불가하여 0원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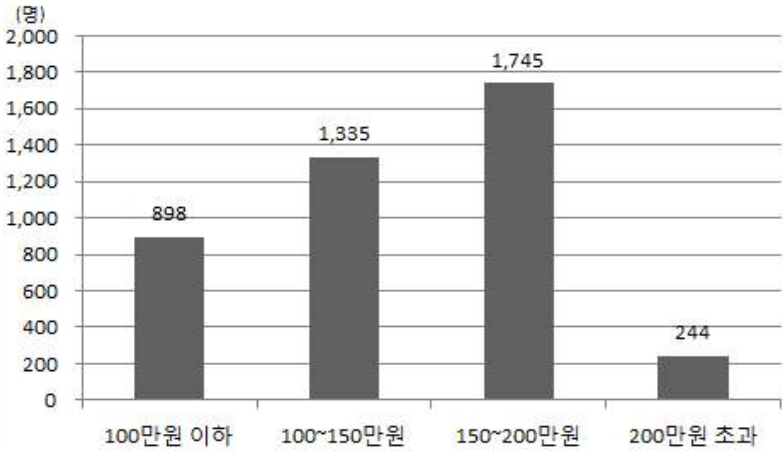


그림 3-2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임금계 기준

- 사업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가 2,940명(6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민간위탁 1,076명(23%), 직접고용 654명(1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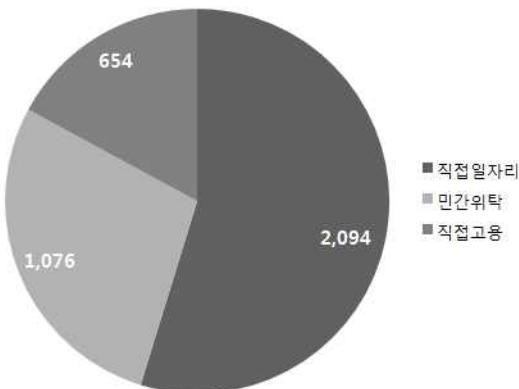


그림 3-3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사업유형 기준

-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3,506명으로 75%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단시간 1,096명(23%), 일용 66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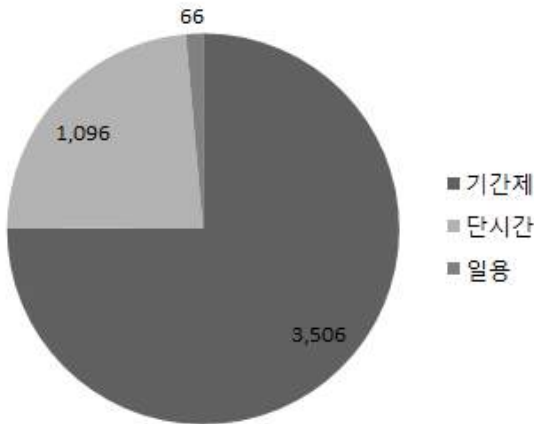


그림 3-4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고용형태 기준

- 직종별로는 기타(2,035명)를 제외하면 사무(보조)원이 1,050명으로 22%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시설물관리원(건축·전기·가스·수도·통신 등) 847명(18%), 환경 미화원(가로·청소·생활폐기물·수거 등) 222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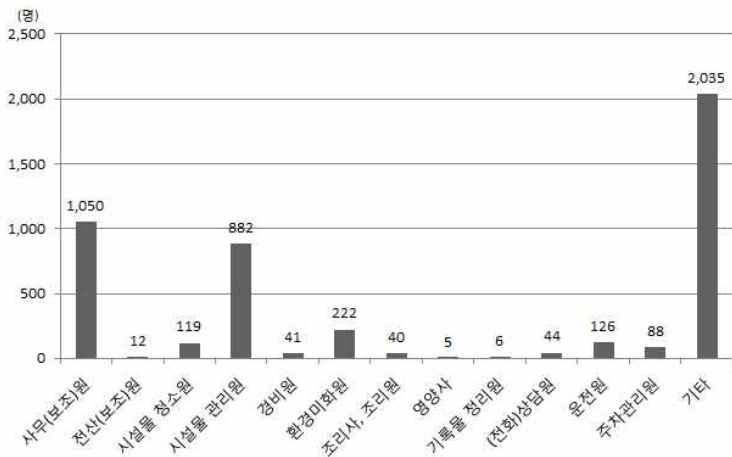


그림 3-5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직종 기준

- 재원별로는 시비가 3,962명으로 85%에 달하고 있으며 시비 매칭이 되지 않은 재원(국비, 자체, 기타)은 271명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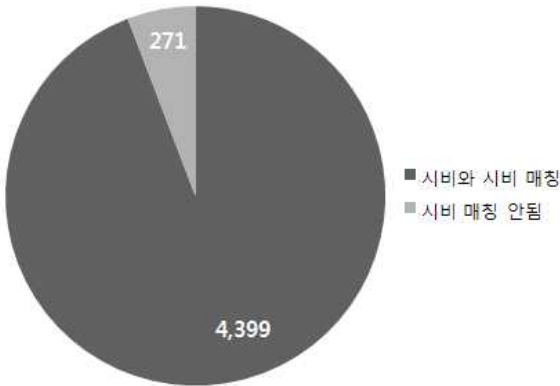


그림 3-6 임금실태조사자 현황 - 재원 기준

3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3.1 분석 과정

-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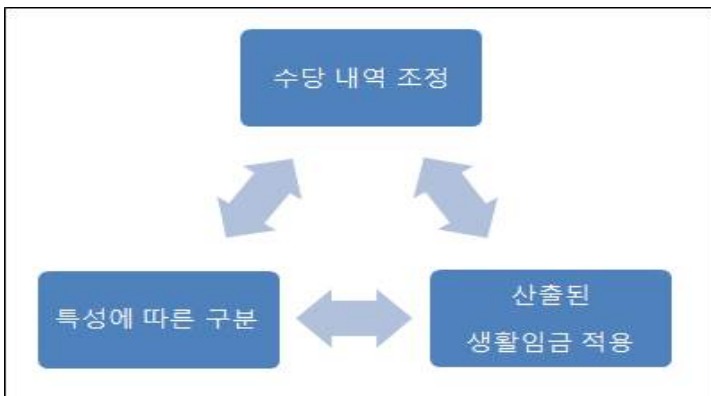


그림 3-7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

- 산출된 생활임금(7가지 안)을 바탕으로 수당내역 조정, 특성별 구분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을 추정
- 생활임금별, 수당내역 조정별, 특성별 구분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이 가능
- 생활임금은 계산된 7가지 금액으로 구분
- 수당내역 조정은 5개로 구분¹²
- 특성은 사업유형별(민간위탁, 직접고용, 직접일자리), 고용형태별(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등), 직종별(사무원, 전산원, 청소원, 관리원 등), 재원별(국비, 시비, 자체, 기타 등) 등의 4가지로 구분
- 각각을 조합하여 상황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을 산출
- 예를 들어 생활임금액이 5,980원(1안)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수당조정내역과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산출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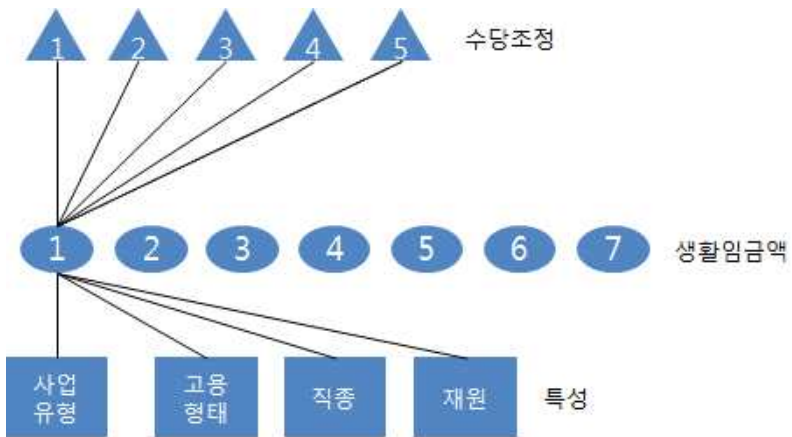


그림 3-8 생활임금액이 1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분석 내용 예시

12 수당조정 1에서 5로 갈수록 생활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내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은 늘어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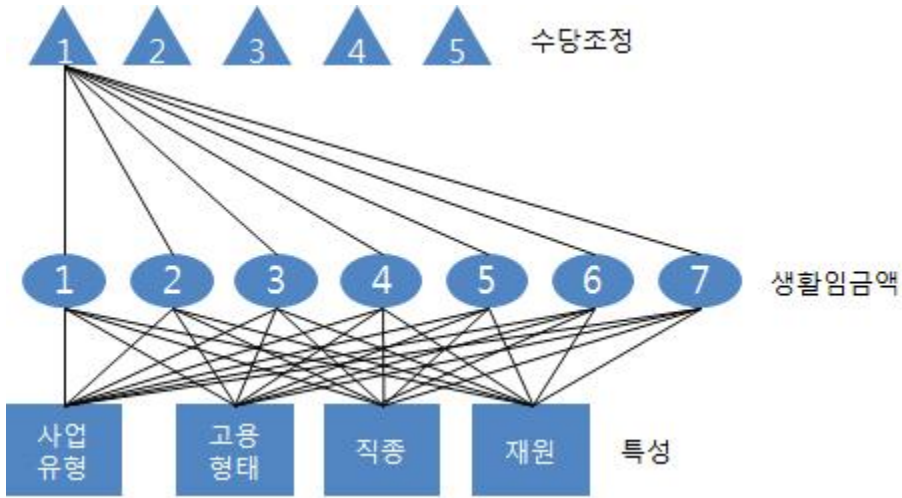


그림 3-9 수당조정내역이 1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분석 내용 예시

- 공공근로사업은 월 임금 지급기준이 최저임금이므로 대상자에게 생활 임금을 보전해 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
- 공공근로 인원 및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

3.2 생활임금 기준 설정: 수당내역 조정

- 실제 임금구조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계가 매우 복잡함
- 임금실태조사 결과 수당의 종류만 총 55개로 나타남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수당내역 조정 방향성
- 수당조정 1에서 5로 갈수록 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많기 때문에 생활임금 도입 시 근로자가 보전받아야 하는 임금은 커짐
- 최저임금 산정 시 고려하는 수당내역을 근간으로 생활임금에 포함여부를 결정(부록 참조)

표 3-5 임금실태조사표에서 나타난 수당 내역

주휴수당	간식비/교통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시간외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비	면허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야간수당	직급보조비	가계안정지원	근속수당
중식비	그룹장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연차수당	돌보미수당	가계보조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출납수당	주거보조수당	기본상여금
처우개선비	영업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성과상여금
출장수당	현장수당	간식비	명절휴가비
출장비	직급수당	자격수당	효도휴가비
여비	관리자수당	기술수당	명절하계수당
교통수당	직무복지수당	약무별정	월유급휴가
교통비	대민업무지원비	특수부서가산	월차수당
교통보조비	보건수당	운전수당	이상 55개

- 수당조정에 대해 5가지 조정 안을 제시한 후 1인이 받고 있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각 수당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을 추정함
- 수당조정 1안은 휴가 관련 수당과 초과근무 관련 수당을 제외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수당 제외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
- 수당조정 2안은 수당조정 1안에 추가로 야간수당을 제외
 -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
- 수당조정 3안은 수당조정 2안에 추가로 출장비, 여비 등 1회성 수당을 제외
 -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수당 제외
- 수당조정 4안은 수당조정 3안에 추가로 교통비 보조관련 수당을 제외
 -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중 교통관련 수당은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수당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 수당조정 5안은 수당조정 4안과 함께 가계지원 관련 수당 제외

·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제외

표 3-6 제외 수당 내역 종합

수당조정 1	수당조정 2	수당조정 3	수당조정 4	수당조정 5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명절하계수당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유급휴가
월차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	야간수당	야간수당	야간수당	야간수당
-	-	출장비	출장비	출장비
-	-	여비	여비	여비
-	-	-	교통수당	교통수당
-	-	-	교통비	교통비
-	-	-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	-	-	간식비/교통비	간식비/교통비
-	-	-	교통비 등	교통비 등
-	-	-	-	가계보조비
-	-	-	-	가족수당
-	-	-	-	가계안정지원
-	-	-	-	가계지원비
-	-	-	-	가계보조수당
-	-	-	-	주거보조수당

33 수당조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331 수당조정 1

- 생활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수당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시간외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명절하계수당, 월유급휴가, 월차수당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45명에서 최대 1,371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2,732만원에서 최고 3억 9,592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혜택금액은 최저 15만 683원에서 최고 28만 8,781원으로 추정

표 3-7 수당조정 1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서울연구원 기존 안				서울연구원 보완 안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생활임금액(원)	5,980	6,448	6,249	6,116	6,202	7,218	6,508
대상자(명)	845	1,002	959	905	951	1,371	1,038
비대상자(명)	3,825	3,668	3,711	3,765	3,719	3,299	3,632
총 소요예산 (천원/월)	127,327	217,779	177,755	152,245	168,606	395,919	230,140
1인당 혜택 금액 (원/월)	150,683	217,344	185,355	168,226	177,293	288,781	221,715

3.3.2 수당조정 2

- 생활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수당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수당조정 1에서 제외한 수당
 - 추가로 야간수당 제외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58명에서 최대 1,384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282만원에서 최고 4억 600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혜택금액은 최저 15만 4,803원에서 최고 29만 3,350원으로 추정

표 3-8 수당조정 2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서울연구원 기존 안				서울연구원 보완 안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생활임금액(원)	5,980	6,448	6,249	6,116	6,202	7,218	6,508
대상자(명)	858	1,021	984	930	976	1,384	1,057
비대상자(명)	3,812	3,649	3,686	3,740	3,694	3,286	3,613
총 소요예산 (천원/월)	132,821	225,555	184,605	158,383	175,204	405,996	238,163
1인당 혜택 금액 (원/월)	154,803	220,916	187,607	170,305	179,512	293,350	225,320

333 수당조정 3

- 생활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수당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수당조정 2에서 제외한 수당
- 추가로 출장수당, 출장비, 여비 제외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58명에서 최대 1,493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288만원에서 최고 4억 1,378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혜택금액은 최저 154,872원에서 최고 277,145원으로 추정

표 3-9 수당조정 3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서울연구원 기존 안				서울연구원 보완 안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생활임금액(원)	5,980	6,448	6,249	6,116	6,202	7,218	6,508
대상자(명)	858	1,021	984	930	976	1,493	1,057
비대상자(명)	3,812	3,649	3,686	3,740	3,694	3,177	3,613
총 소요예산 (천원/월)	132,881	225,615	184,665	158,443	175,264	413,778	238,223
1인당 혜택 금액 (원/월)	154,872	220,975	187,668	170,369	179,574	277,145	225,377

334 수당조정 4

- 생활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수당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수당조정 3에서 제외한 수당
- 추가로 교통수당, 교통비, 교통보조비, 간식비/교통비 제외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60명에서 최대 1,639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584만원에서 최고 4억 4,219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혜택금액은 최저 15만 7,948원에서 최고 26만 9,795원으로 추정

표 3-10 수당조정 4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서울연구원 기존 안				서울연구원 보완 안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생활임금액(원)	5,980	6,448	6,249	6,116	6,202	7,218	6,508
대상자(명)	860	1,141	1,097	1,042	1,088	1,639	1,179
비대상자(명)	3,810	3,529	3,573	3,628	3,582	3,031	3,491
총 소요예산 (천원/월)	135,835	234,998	190,342	161,772	180,109	442,194	248,776
1인당 혜택 금액 (원/월)	157,948	205,958	173,511	155,251	165,541	269,795	211,006

3 3 5 수당조정 5

- 생활임금에서 제외한 수당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수당조정 4에서 제외한 수당
- 추가로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가계안정지원,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주거보조수당 제외
-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67명에서 최대 1,732명
-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3,772만원에서 최고 4억 5,932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혜택금액은 최저 15만 8,848원에서 최고 26만 5,195원으로 추정

표 3-11 수당조정 5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서울연구원 기존 안				서울연구원 보완 안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생활임금액(원)	5,980	6,448	6,249	6,116	6,202	7,218	6,508
대상자(명)	867	1,148	1,107	1,052	1,098	1,732	1,185
비대상자(명)	3,803	3,522	3,563	3,618	3,572	2,938	3,485
총 소요예산 (천원/월)	137,721	237,727	192,758	163,907	182,423	459,317	251,593
1인당 혜택 금액 (원/월)	158,848	207,079	174,126	155,805	166,141	265,195	212,314

특성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분석

-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았던 분야에 대한 유추가 가능함
- 특성에 따른 구분요소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많으면 해당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생활임금액(7가지 안)과 수당내역(5가지 안)을 고려하면 총 35가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이 분석되며 4가지 특성을 고려하면 총 140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
- 여기서는 수당조정 2를 선택하였을 경우의 특성별 사례를 예시함

341 사업유형별

- 사업유형은 민간위탁, 직접고용, 직접일자리로 나눔
- 민간위탁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 민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직접고용은 서울시 부서 및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경우를 의미함
- 직접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일자리뉴딜사업 등이 포함됨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필요예산은 직접일자리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민간위탁, 직접고용 순
- 직접일자리 총인원 2,940명 중 최소 532명에서 최대 793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며 예산은 최저 5,988만원에서 최고 2억 1,691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민간위탁 총인원 1,076명 중 최소 228명에서 최대 420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며 예산은 최저 4,776만원에서 최고 1억 3,093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직접고용 총인원 654명 중 최소 98명에서 최대 171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며 예산은 최저 2,518만원에서 최고 5,816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로 추정

표 3-12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28	47,759	303	73,864	283	62,043	262	54,656
직접고용	654	98	25,181	118	36,072	102	31,090	102	28,166
직접일자리	2,940	532	59,881	600	115,619	599	91,472	566	75,561

표 3-13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구분	생활 임금액 (원)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75	59,371	420	130,926	331	77,619
직접고용	654	102	30,057	171	58,163	118	37,575
직접일자리	2,940	599	85,776	793	216,906	608	122,970

3.4.2 고용형태별

- 고용형태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으로 나뉨
-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길며 단시간 및 일용은 근무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음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필요예산은 기간제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단시간, 일용의 순
- 총인원이 가장 많은 기간제 근로자는 3,506명 중 최소 792명에서 최대 1,264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며 소요예산은 최저 1억 2,543만원에서 최고 3억 7,973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표 3-14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792	125,433	914	212,143	895	174,206	842	149,559
단시간	1,096	56	4,344	64	7,868	63	6,342	63	5,341
일용	66	10	3,043	43	5,544	26	4,057	25	3,484

표 3-15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구분	생활 임금액 (원)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887	165,367	1,264	379,734	950	223,831
단시간	1,096	63	5,988	73	14,290	64	8,328
일용	66	26	3,849	47	11,684	43	6,004

3 4 3 직종별

- 주요 수행업무에 따라 직종은 크게 13개로 나눔
-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시설물청소원 시설물관리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조리사 및 조리원, 영양사, 기록물정리원, (전화)상담원, 운전원, 주차관리원, 기타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사무(보조)원
- 총 1,050명 중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최소 423명에서 최대 656명이며 필요한 예산은 최저 5,685만원에서 최고 1억 8,82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표 3-16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23	56,850	509	102,467	485	82,283	468	69,496	
전산(보조)원	12	6	2,333	9	3,097	6	2,725	6	2,531	
시설물 청소원	119	42	7,136	52	11,304	50	9,456	49	8,247	
시설물 관리원	882	146	3,615	177	19,261	175	12,266	146	7,773	
경비원	41	33	13,537	33	17,612	33	15,880	33	14,721	
환경미화원	222	9	1,663	13	2,716	11	2,236	11	1,944	
조리사·조리원	40	15	2,442	19	4,091	19	3,326	16	2,877	
영양사	5	0	0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1,098	4	1,452	4	1,301	4	1,201	
(전화)상담원	44	5	149	6	539	6	351	5	249	
운전원	126	1	97	4	354	2	207	2	152	
주차관리원	88	8	4,075	11	5,252	10	4,721	8	4,376	
기타	2,035	166	39,825	184	57,409	183	49,854	182	44,816	

표 3-17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구분	생활 임금액 (원)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81	77,714	656	188,265	538	108,666	
전산(보조)원	12	6	2,656	10	4,657	9	3,217	
시설물 청소원	119	49	9,024	78	19,839	52	11,884	
시설물 관리원	882	175	10,614	246	50,074	184	21,453	
경비원	41	33	15,470	33	24,317	33	18,135	
환경미화원	222	11	2,133	25	6,483	13	2,871	
조리사·조리원	40	17	3,158	21	7,123	19	4,322	
영양사	5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1,266	4	2,036	4	1,498	
(전화)상담원	44	5	313	9	1,349	6	596	
운전원	126	2	187	4	954	4	401	
주차관리원	88	10	4,598	28	8,462	11	5,423	
기타	2,035	183	48,071	270	92,436	184	59,697	

재원별

- 재원은 크게 국비, 시비, 구비, 자체, 기타로 나눔
- 국비는 인건비를 국가의 예산에서 지급
- 시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며 구비는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임
- 자체는 서울시 및 사업소·출연기관 등에서 스스로 재원을 마련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필요예산은 시비 사업이 대부분이며 그 외의 경우는 일부에 불과함
- 시비 사업은 총 인원 3,962명 중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최소 715명에서 최대 1,171명이며 예산은 최저 1억 1,219만원에서 최고 3억 4,332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표 3-18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국비	58	3	481	3	775	3	650	3	566
국비·시비	223	16	1,803	19	3,482	17	2,746	17	2,273
국비·시비·구비	7	1	123	1	172	1	151	1	137
시비	3,962	715	112,194	851	190,982	821	156,185	770	133,896
시비·구비	33	2	270	2	416	2	354	2	313
시비·자체	150	2	825	2	1,006	2	929	2	877
자체	206	112	16,657	127	27,214	125	22,622	123	19,624
기타	31	7	468	16	1,510	13	968	12	697

표 3-19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2)

구분	생활 임금액 (원)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6,202		7,218		6,508	
국비	58	3	620	3	1,257	3	812	
국비,시비	223	17	2,579	28	7,042	19	3,718	
국비,시비,구비	7	1	146	2	328	1	178	
시비	3,962	814	148,186	1,171	343,316	885	201,696	
시비,구비	33	2	339	3	735	2	435	
시비,자체	150	2	911	2	1,303	2	1,029	
자체	206	124	21,553	157	48,250	129	28,622	
기타	31	13	870	18	3,763	16	1,673	

35 공공근로사업

351 개요

-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4년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5개월씩 수행할 예정으로 목표 인원이 8,600명(시 600명, 구 8,000명)임
- 시비로 집행되며 소요예산은 약 329억원으로 참여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성됨
 - 참여자 인건비는 시 직접사업비와 구 지원사업비로 나누어지며 각각 약 32억원, 약 296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
 - 사무관리비는 1억 2,600만원으로 안전장비구입, 취업교육, 모니터링(성과관리) 등에 집행될 예정
 -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이 집행될 예정

표 3-20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단위: 백만원)

총액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 직접사업비	구 지원사업비		
32,864	3,167	29,559	126	12

- 육아·가사여성, 취업준비 청년의 경제활동참가 유도 등의 목적으로 종전 일일 8시간에서 개편 후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

3.5.2 추가 소요 예산 추정

- 추가 소요예산 추정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1인은 월 126시간, 일 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
 -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시급으로 받을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 추정
 - 중식비는 고려하지 않음
- 2014년 서울시의 목표인원인 600명에게 우선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추가 예산 소요 추정액은 월 기준 최저 약 5,821만원에서 최고 1억 5,180만원임
 - 연간 10개월 기준으로 최저 약 6억원에서 최고 15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전체 8,60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 추정액은 월 기준 최저 8억 3,437만원에서 최고 21억 7,587만원
 - 연간 10개월 기준으로 최저 약 83억원에서 최고 218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표 3-2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연간 추가 소요 예산액 추정

(단위: 천원)

구분	600명 지원 기준	8,600명 지원 기준
1안	582,120	8,343,720
2안	935,928	13,414,968
3안	785,484	11,258,604
4안	684,936	9,817,416
5안	749,952	10,749,312
6안	1,518,048	21,758,688
7안	981,288	14,065,128

※중식비는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3.6 종합

- 임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총 4,670명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하였음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최소 845명에서 최대 1,732명으로 추정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소요예산은 월 기준 최저 1억 2,732만원에서 최고 4억 5,931만원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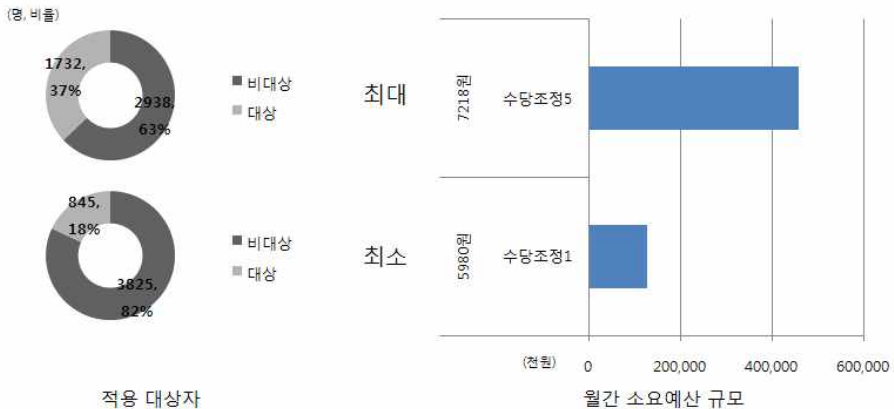


그림 3-10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월간 소요예산 규모

- 서울시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대상자 및 소요예산 규모는 서울시 비정규직(직접고용 및 민간위탁)에 비해 공공근로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
- 공공근로사업은 8,600명에 최저 소요예산이 월 8억 3,427만원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비정규직의 월 최대 소요예산 4억 5,931만원에 비해 큰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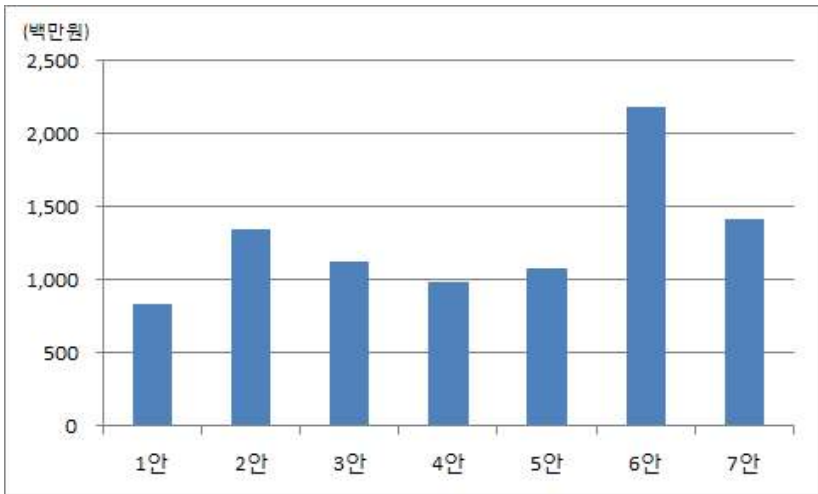


그림 3-11 생활임금 결정액에 따른 월간 추가예산 소요 추정액(공공근로 8,600명 대상)

IV 정책제언

- 1 시사점
- 2 제도실행을 위한 제언

IV 정책제언

1 시사점

1.1 생활임금 적용 시 나타나는 현상

1.1.1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

- 생활임금 적용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임금수준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음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대다수가 근로취약계층이자 저임금계층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수준 향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임금이 올라서 너무 좋다”, “오른 월급으로 적게나마 적금도 들었다”는 인터뷰 의견
- 실질적인 임금향상으로 인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직업에 대한 성취감도 올라감
- 해외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Wills and Linneker, 2012)
- 생활임금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생활임금은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를 향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참여와 혁신, 이제는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2013-06-07)
- 일정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도 근로빈곤층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진작, 경제규모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노동자 권익에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

- 생활임금제 실행과 같은 저임금계층을 위한 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복지에 기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

112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부작용

-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함
- 조례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기도는 도의회 구성원들의 갈등에 의해 생활임금조례가 부결되고 긴장관계가 지속됨
-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
- 서울시 노원구 및 성북구의 방식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생활임금 기준의 일정금액이 보장됨
- 최저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초과근무를 기피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도 함
-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면 저임금계층은 급여가 오르지만 차상위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낌

12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시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직접고용 및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연간 56억원(월 4억 6천만원) 이내인 것으로 추정

-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최대 210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
- o 서울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며, 일부 적용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제도실행을 위한 제언

2.1 생활임금 효과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 o 생활임금 관련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국내 동향을 파악한 후 서울시에 적합한 제도 적용방안을 모색
 - 영국(런던),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준비에 활용
 -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노원구 및 성북구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
- o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 현재 생활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 간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
 - 조정구간을 설정하여 생활임금 적용 시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차등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고려¹³
 - 현재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 o 생활임금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민, 이해당사자, 의사결정자와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

13 예를 들어 생활임금이 7,000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존에 7,100원을 받는 사람도 일부 금액(1% 정도)을 인상해주는 방법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

- 생활임금 시행 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2.2 정기적인 생활임금 실태조사 시행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임금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을 파악
- 임금실태조사표의 내용과 실제 받고 있는 급여 간 차이가 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 시행
- 생활임금제 적용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 생활임금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임금실태를 파악
- 감시를 위한 기구 및 신고센터 설치

2.3 생활임금 도입 및 실행 방안

- 생활임금제를 실행하는 방안은 '전면 도입'과 '우선 적용 후 확대' 등 도입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전 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형평성의 논란이 없으나 생활임금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 일부 기관에 우선적용 후 확대하는 방안은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우선 적용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기관에 우선적용을 시행하게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적절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본청 소속 부서 중 일부 기관에 우선 적용
- 근로자 임금의 재원이 시비일 경우 우선 적용

- 시의 직접고용 또는 직접일자리에 우선 적용 등

2.4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2.4.1 조례안 가결을 위한 노력

-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예측하기 어려움
- 부천시는 여야의원 공동으로 생활임금조례 의결에 찬성함
- 경기도에서는 야당은 생활임금조례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여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생활임금 도입 취지가 저소득층의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이란 점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는 의회 의원들이 생활임금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함
- 집행부인 서울시 측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여야 함

2.4.2 생활임금조례 제정 과정

- 생활임금제 도입은 집행부인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거나 직접 발의하도록 해야 함
- 이전 부천시는 의원입법과정을 거쳐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처에서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 향후 조치계획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거나 직접 발의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시

2.5 민간부문 확대 방안

-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에 생활임금 적용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안으로 제시되어야 함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 o 생활임금은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제도임을 홍보해야 함
-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직원의 생산성과 충성도 증대, 기업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Wills and Linneker, 2012)
- o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인증제도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함
-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생활임금 관련 홍보물에 참여기업을 병기하는 방법 고려

2.6 시민 공감대 형성

- o 생활임금제의 실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 생활임금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일반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당연히 좋은 일 아닌가요?”(일반시민, 2013.10.25, 서울신문, “생활임금’ 받고 사는 게 행복해졌어요”)
-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 생활임금 도입 취지 설명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 지하철 광고를 활용한 생활임금제 홍보 방안 고려
 - 언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계획 마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권순원, 2012,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원구청·성북구청, 2013, 「생활임금(Living Wage) 활성화 및 확산전략에 대한 연구」
부천시역노사민정협의회, 2012,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종합보고서」
서울신문, 2013.10.25., “‘생활임금’ 받고 사는 게 행복해졌어요”
서울연구원, 2013,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참여와 혁신, 2013.06.07., “이제는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Jane Wills and Brain Linneker, 2012,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London Living Wage*,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부록

부록 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력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부록 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공동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p>위의 공동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p>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동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부록 표 3 수당조정 1을 선택하였을 경우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15	43,043	284	66,865	258	55,970	237	49,295	250	53,550	407	121,626	312	70,373
직접고용	654	98	24,404	118	35,295	102	30,313	102	27,389	102	29,280	171	57,387	118	36,798
직접일자리	2,940	532	59,880	600	115,619	599	91,472	566	75,561	599	85,776	793	216,906	608	122,969

부록 표 4 수당조정 1을 선택하였을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780	120,018	902	205,049	877	167,748	824	143,617	869	159,091	1,260	371,966	938	216,578
단시간	1,096	56	4,344	64	7,867	63	6,341	63	5,341	63	5,988	71	14,078	64	8,328
일용	66	9	2,965	36	4,862	19	3,666	18	3,287	19	3,527	40	9,875	36	5,234

부록 표 5 수당조정 1을 선택하였을 경우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23	56,850	509	102,467	485	82,283	468	69,496	481	77,714	656	188,265	538	108,666
전산(보조)원	12	6	2,333	9	3,097	6	2,725	6	2,531	6	2,656	10	4,657	9	3,217
시설물 청소원	119	42	7,136	52	11,304	50	9,456	49	8,247	49	9,024	78	19,839	52	11,884
시설물 관리원	882	145	2,944	176	18,492	174	11,538	145	7,073	174	9,896	244	49,013	183	20,672
경비원	41	28	12,713	28	16,299	28	14,774	28	13,755	28	14,414	28	22,199	28	16,759
환경미화원	222	9	1,663	13	2,716	11	2,236	11	1,944	11	2,133	25	6,483	13	2,871
조리사·조리원	40	15	2,442	19	4,091	19	3,326	16	2,877	17	3,158	21	7,123	19	4,322
영양사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894	4	1,249	4	1,098	4	997	4	1,062	4	1,833	4	1,294
(전화)상담원	44	5	149	6	539	6	351	5	249	5	313	9	1,349	6	596
운전원	126	1	97	4	354	2	207	2	152	2	187	4	954	4	401
주차관리원	88	8	2,833	11	4,011	10	3,480	8	3,135	10	3,356	28	7,220	11	4,182
기타	2,035	159	37,272	171	53,159	164	46,281	163	41,788	164	44,691	264	86,983	171	55,276

부록 표 6 수당조정 1을 선택하였을 경우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1)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국비	58	3	481	3	775	3	650	3	566	3	620	3	1,257	3	812
국비·시비	223	16	1,803	19	3,482	17	2,746	17	2,273	17	2,579	28	7,042	19	3,718
국비·시비·구비	7	1	123	1	171	1	151	1	137	1	146	2	328	1	178
시비	3,962	702	106,701	832	183,206	796	149,336	745	127,757	789	141,588	1,158	333,240	866	193,673
시비·구비	33	2	270	2	416	2	354	2	313	2	339	3	735	2	435
시비·자체	150	2	825	2	1,006	2	929	2	877	2	911	2	1,303	2	1,029
자체	206	112	16,657	127	27,214	125	22,622	123	19,624	124	21,553	157	48,250	129	28,622
기타	31	7	468	16	1,510	13	968	12	697	13	870	18	3,763	16	1,673

부록 표 7 수당조정 2를 선택하였을 경우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15	47,759	284	73,864	258	62,043	237	54,656	250	59,371	407	130,926	312	77,619
직접고용	654	98	25,181	118	36,072	102	31,090	102	28,166	102	30,057	171	58,163	118	37,575
직접일자리	2,940	532	59,881	600	115,619	599	91,472	566	75,561	599	85,776	793	216,906	608	122,970

부록 표 8 수당조정 2를 선택하였을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792	125,433	914	212,143	895	174,206	842	149,559	887	165,367	1,266	380,234	950	223,831
단시간	1,096	56	4,344	64	7,868	63	6,342	63	5,341	63	5,988	71	14,078	64	8,328
일용	66	10	3,043	43	5,544	26	4,057	25	3,484	26	3,849	47	11,684	43	6,004

부록 표 9 수당조정 2를 선택하였을 경우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23	56,850	509	102,467	485	82,283	468	69,496	481	77,714	656	188,265	538	108,666
전산(보조)원	12	6	2,333	9	3,097	6	2,725	6	2,531	6	2,656	10	4,657	9	3,217
시설물 청소원	119	42	7,136	52	11,304	50	9,456	49	8,247	49	9,024	78	19,839	52	11,884
시설물 관리원	882	146	3,615	177	19,261	175	12,266	146	7,773	175	10,614	246	50,074	184	21,453
경비원	41	33	13,537	33	17,612	33	15,880	33	14,721	33	15,470	33	24,317	33	18,135
환경미화원	222	9	1,663	13	2,716	11	2,236	11	1,944	11	2,133	25	6,483	13	2,871
조리사·조리원	40	15	2,442	19	4,091	19	3,326	16	2,877	17	3,158	21	7,123	19	4,322
영양사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1,098	4	1,452	4	1,301	4	1,201	4	1,266	4	2,036	4	1,498
(전화)상담원	44	5	149	6	539	6	351	5	249	5	313	9	1,349	6	596
운전원	126	1	97	4	354	2	207	2	152	2	187	4	954	4	401
주차관리원	88	8	4,075	11	5,252	10	4,721	8	4,376	10	4,598	28	8,462	11	5,423
기타	2035	166	39,825	184	57,409	183	49,854	182	44,816	183	48,071	270	92,436	184	59,697

부록 표 10 수당조정 2를 선택하였을 경우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국비	58	3	481	3	775	3	650	3	566	3	620	3	1,257	3	812
국비·시비	223	16	1,803	19	3,482	17	2,746	17	2,273	17	2,579	28	7,042	19	3,718
국비·시비·구비	7	1	123	1	172	1	151	1	137	1	146	2	328	1	178
시비	3,962	715	112,194	851	190,982	821	156,185	770	133,896	814	148,186	1,171	343,316	885	201,696
시비·구비	33	2	270	2	416	2	354	2	313	2	339	3	735	2	435
시비·자체	150	2	825	2	1,006	2	929	2	877	2	911	2	1,303	2	1,029
자체	206	112	16,657	127	27,214	125	22,622	123	19,624	124	21,553	157	48,250	129	28,622
기타	31	7	468	16	1,510	13	968	12	697	13	870	18	3,763	16	1,673

부록 표 11 수당조정 3을 선택하였을 경우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15	47,759	284	73,864	258	62,043	237	54,656	250	59,371	407	130,926	312	77,619
직접고용	654	98	25,181	118	36,072	102	31,090	102	28,166	102	30,057	171	58,163	118	37,575
직접일자리	2,940	532	59,941	600	115,679	599	91,532	566	75,621	599	85,836	793	224,689	608	123,030

부록 표 12 수당조정 3을 선택하였을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792	125,433	914	212,143	895	174,206	842	149,559	887	165,367	1,266	380,338	950	223,831
단시간	1,096	56	4,404	64	7,928	63	6,402	63	5,401	63	6,048	180	21,756	64	8,388
일용	66	10	3,043	43	5,544	26	4,057	25	3,484	26	3,849	47	11,684	43	6,004

부록 표 13 수당조정 3을 선택하였을 경우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23	56,850	509	102,467	485	82,283	468	69,496	481	77,714	656	188,365	538	108,666
전산(보조)원	12	6	2,333	9	3,097	6	2,725	6	2,531	6	2,656	10	4,657	9	3,217
시설물 청소원	119	42	7,136	52	11,304	50	9,456	49	8,247	49	9,024	78	19,839	52	11,884
시설물 관리원	882	146	3,615	177	19,261	175	12,266	146	7,773	175	10,614	246	50,074	184	21,453
경비원	41	33	13,537	33	17,612	33	15,880	33	14,721	33	15,470	33	24,317	33	18,135
환경미화원	222	9	1,663	13	2,716	11	2,236	11	1,944	11	2,133	25	6,483	13	2,871
조리사·조리원	40	15	2,442	19	4,091	19	3,326	16	2,877	17	3,158	21	7,123	19	4,322
영양사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1,098	4	1,452	4	1,301	4	1,201	4	1,266	4	2,036	4	1,498
(전화)상담원	44	5	149	6	539	6	351	5	249	5	313	9	1,349	6	596
운전원	126	1	97	4	354	2	207	2	152	2	187	4	954	4	401
주차관리원	88	8	4,075	11	5,252	10	4,721	8	4,376	10	4,598	28	8,462	11	5,423
기타	2,035	166	39,885	184	57,469	183	49,913	182	44,876	183	48,131	379	100,118	184	59,757

부록 표 14 수당조정 3을 선택하였을 경우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국비	58	3	481	3	775	3	650	3	566	3	620	3	1,257	3	812
국비·시비	223	16	1,803	19	3,482	17	2,746	17	2,273	17	2,579	28	7,142	19	3,718
국비·시비·구비	7	1	183	1	232	1	211	1	197	1	206	2	388	1	238
시비	3,962	715	112,194	851	190,982	821	156,185	770	133,896	814	148,186	1,280	350,938	885	201,696
시비·구비	33	2	270	2	416	2	354	2	313	2	339	3	735	2	435
시비·자체	150	2	825	2	1,006	2	929	2	877	2	911	2	1,303	2	1,029
자체	206	112	16,657	127	27,214	125	22,622	123	19,624	124	21,553	157	48,250	129	28,622
기타	31	7	468	16	1,510	13	968	12	697	13	870	18	3,763	16	1,673

부록 표 15 수당조정 4를 선택하였을 경우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15	47,934	284	74,445	258	62,388	237	54,916	250	59,684	407	132,414	312	78,288
직접고용	654	98	25,267	118	36,159	102	31,177	102	28,253	102	30,144	171	61,856	118	37,673
직접일자리	2,940	532	62,634	600	124,395	599	96,776	566	78,604	599	90,281	793	247,924	608	132,816

부록 표 16 수당조정 4를 선택하였을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794	128,323	925	215,526	899	177,267	845	152,533	890	168,395	1,412	397,279	963	227,364
단시간	1,096	56	4,470	173	13,928	172	9,018	172	5,755	172	7,865	180	33,231	173	15,408
일용	66	10	3,043	43	5,544	26	4,057	25	3,484	26	3,849	47	11,684	43	6,004

부록 표 17 수당조정 4를 선택하였을 경우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23	56,850	514	102,720	487	82,372	470	69,529	483	77,784	664	194,149	544	108,993
전산(보조)원	12	6	2,333	9	3,097	6	2,725	6	2,531	6	2,656	10	4,657	9	3,217
시설물 청소원	119	42	7,136	52	11,304	50	9,456	49	8,247	49	9,024	95	22,155	52	11,884
시설물 관리원	882	146	3,736	177	19,382	175	12,386	146	7,894	175	10,734	359	55,032	184	21,574
경비원	41	33	13,537	33	17,612	33	15,880	33	14,721	33	15,470	33	24,317	33	18,135
환경미화원	222	9	1,663	13	2,716	11	2,236	11	1,944	11	2,133	25	6,483	13	2,871
조리사·조리원	40	15	2,442	19	4,091	19	3,326	16	2,877	17	3,158	21	7,123	19	4,322
영양사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1,098	4	1,452	4	1,301	4	1,201	4	1,266	4	2,036	4	1,498
(전화)상담원	44	5	149	6	539	6	351	5	249	5	313	9	1,349	6	596
운전원	126	1	97	4	354	2	207	2	152	2	187	4	954	4	401
주차관리원	88	8	4,075	11	5,252	10	4,721	8	4,376	10	4,598	28	8,462	11	5,423
기타	2,035	168	42,720	299	66,478	294	55,381	292	48,051	293	52,785	387	115,476	300	69,862

부록 표 18 수당조정 4를 선택하였을 경우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국비	58	3	481	3	775	3	650	3	566	3	620	3	1,257	3	812
국비·시비	223	16	1,803	19	3,482	17	2,746	17	2,273	17	2,579	28	7,142	19	3,718
국비·시비·구비	7	1	183	1	232	1	211	1	197	1	206	2	388	1	238
시비	3,962	715	114,908	967	199,810	931	161,454	879	136,900	923	152,653	1,421	378,134	1,003	211,643
시비·구비	33	2	270	2	416	2	354	2	313	2	339	3	735	2	435
시비·자체	150	2	890	2	1,071	2	994	2	943	2	976	3	1,406	2	1,094
자체	206	114	16,832	131	27,703	128	22,965	126	19,883	127	21,866	161	49,368	133	29,163
기타	31	7	468	16	1,510	13	968	12	697	13	870	18	3,763	16	1,673

부록 표 19 수당조정 5를 선택하였을 경우 사업유형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민간위탁	1,076	215	49,554	284	76,908	258	64,539	237	56,785	250	61,733	407	135,694	312	80,839
직접고용	654	98	25,292	118	36,183	102	31,201	102	28,277	102	30,168	171	63,036	118	37,697
직접일자리	2,940	532	62,875	600	124,636	599	97,018	566	78,845	599	90,522	793	260,586	608	133,057

부록 표 20 수당조정 5를 선택하였을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기간제	3,506	801	130,198	932	218,245	909	179,673	855	154,657	900	170,699	1,505	414,392	969	230,170
단시간	1,096	56	4,480	173	13,938	172	9,028	172	5,766	172	7,875	180	33,241	173	15,418
일용	66	10	3,043	43	5,544	26	4,057	25	3,484	26	3,849	47	11,684	43	6,004

부록 표 21 수당조정 5를 선택하였을 경우 직종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사무(보조)원	1,050	429	57,321	518	103,847	495	83,280	478	70,215	491	78,613	665	198,217	547	110,162
전산(보조)원	12	6	2,333	9	3,097	6	2,725	6	2,531	6	2,656	10	4,657	9	3,217
시설물 청소원	119	42	7,136	52	11,304	50	9,456	49	8,247	49	9,024	96	23,015	52	11,884
시설물 관리원	882	146	4,295	177	19,942	175	12,946	146	8,453	175	11,294	447	65,565	184	22,133
경비원	41	33	13,687	33	17,762	33	16,030	33	14,872	33	15,620	33	24,467	33	18,285
환경미화원	222	9	1,763	13	2,815	11	2,336	11	2,044	11	2,233	25	6,583	13	2,971
조리사·조리원	40	15	2,542	19	4,191	19	3,426	16	2,977	17	3,258	21	7,223	19	4,422
영양사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물 정리원	6	4	1,098	4	1,452	4	1,301	4	1,201	4	1,266	4	2,036	4	1,498
(전화)상담원	44	5	149	6	539	6	351	5	249	5	313	10	1,479	6	596
운전원	126	1	97	4	354	2	207	2	152	2	187	4	954	4	401
주차관리원	88	8	4,275	11	5,452	10	4,921	8	4,576	10	4,797	28	8,661	11	5,623
기타	2035	169	43,025	302	66,971	296	55,779	294	48,390	295	53,161	389	116,460	303	70,400

부록 표 22 수당조정 5를 선택하였을 경우 재원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구분	생활 임금액 (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총인원 (명)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대상 인원 (명)	필요 예산 (천원)	
국비	58	3	481	3	775	3	650	3	566	3	620	3	1,257	3	812
국비·시비	223	16	1,803	19	3,482	17	2,746	17	2,273	17	2,579	29	7,272	19	3,718
국비·시비·구비	7	1	183	1	232	1	211	1	197	1	206	2	388	1	238
시비	3,962	718	116,203	968	201,394	935	162,954	883	138,285	927	154,110	1,510	393,341	1,004	213,248
시비·구비	33	2	270	2	416	2	354	2	313	2	339	3	735	2	435
시비·자체	150	2	900	2	1,081	2	1,004	2	953	2	986	3	1,432	2	1,104
자체	206	118	17,413	137	28,838	134	23,871	132	20,622	133	22,713	164	51,128	138	30,364
기타	31	7	468	16	1,510	13	968	12	697	13	870	18	3,763	16	1,673

서울연 2013-OR-54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2월 28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비매품 ISBN 979-11-5700-008-1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